

1. 개정이유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10급 → 14급)를 반영하여, 테러 피해자의 신체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10급 → 14급)을 완화함

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포상금 신청 기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

다.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신청기간(피해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피해 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

라.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내 첨부서류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가))
신청서류 제출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만 첨부
가능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24. ~ 6. 3.) 예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다목 중 “1부”를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하고,
같은 서식 1)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며,
같은 서식 2)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직위)	
	주소		
신고개요			
처벌사항	※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 검찰 처분 또는 재판결과 등 기재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신청인 예금계좌 및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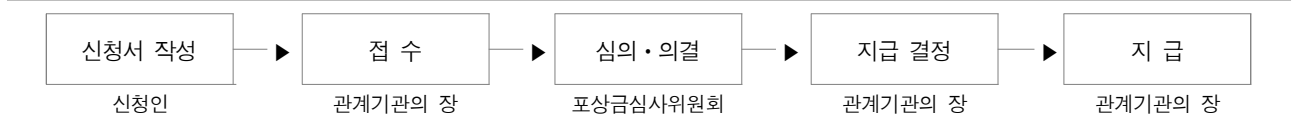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도 증명서 1부.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천 사실 통지서 또는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 3. 공적자술서 1부.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29조제3항 후단 또는 같은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②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③ 테러사건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⑤ 신체피해 지원금(치료비) 신청	기치료비	추정치료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피해 경위 및 내용	
	*이 난이 부족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작성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 피해자의 유족 또는 신체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만 표시

⑥ 재산피해 지원금(복구비) 신청	피해 금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피해 경위 및 내용	
	*이 난이 부족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작성	

본인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안내사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희생자·피해자 또는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1부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및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청구서 1부(신체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1부(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 따른 장래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와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재산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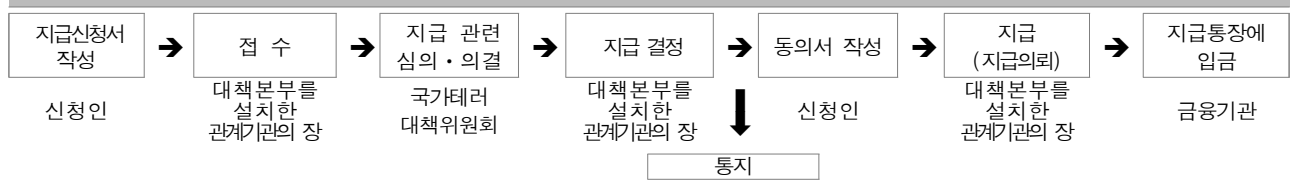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 단, 신청인이 2명 이상이나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에 적습니다.
3. ②란에는 신청인과 테러사건 피해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의 아버지, ○○○의 어머니, ○○○의 자녀 등).
4. ③란에는 테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 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
6. ⑤란은 테러사건으로 신체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습니다.
7. ⑥란은 테러사건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금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 10.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① ----- ----- ----- ----- -----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11급 또는 12급: 3개월</u> <u>12. 13급 또는 14급: 2개월</u>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	
연 락 처	(02) 2100 - 2039